

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존중 안내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
▲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▲

무분별한 폭언과 폭행,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인권존중

**사회복지종사자도
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**

1. 아름다운 말로 존중해 주세요
2. 부당한 요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
3. 무조건적인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



(사)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
Korea Association of Long Term Care Center for Seniors

다함께인권존중

**우리기관
인권지킴이**

우리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



어르신과 종사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
#폭언 #폭행 #성희롱예방
(사)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

사회복지종사자인권

우리 가족의 인권만큼 소중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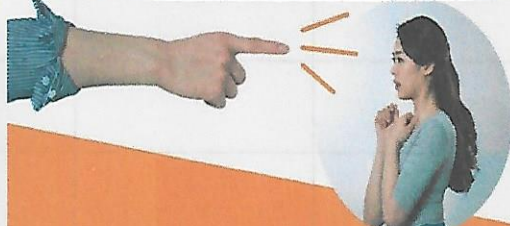
공감	반말, 욕설, 폭언 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말아주세요! 함께 느끼고 공감해요	배려	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름다운 미소와 배려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줍니다.
존중	마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존중해 주세요! 그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, 딸입니다.	긍정	종사자에 대한 긍정의 감정을 느낀다면, 그때그때 표현해 주세요!

"감정노동자보호, 예방이 먼저입니다."

무분별한 폭언과 폭행,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(사)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장기요양연구소 평가지원팀

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



장기요양 종사자가 돌봄 업무 현장에서 업무 수행과정 중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, 이웃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을 의미 합니다

- 1 신체적 폭력
- 2 언어·정서적 폭력
- 3 성적 폭력
- 4 경제적 폭력